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「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」(구 창작준비금)

산정안내서

2024. 7.





목차

제1장 조사

소사 개요	
소득 조사	
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	4
재산 조사	 8
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 —————	
자격 조사	 14
소득인정액 산정	 14
제2장 소득인정액 확정·통지 및 최신화 신청 제도	
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	
개인정보 보호	
제3장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	
71.71. 5 -4.0	4.0
감정노동 개요	— 18
별첨	
관련 법령	
소득, 재산 항목	
소득·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 ——————	<u> </u>

1 조사

□ 조사 개요

- o (조사 대상) 신청인
 -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을 위한 소득·재산·자격 조사는 신청인이 신청 및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,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배점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격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함
 -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*에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소득·재산· 자격 조사를 진행함
 - 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- o (조사 내용) 신청인의 소득·재산 및 신청인의 자격사항
- (조사 방법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·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그 밖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
 - 별도 개인별 소득·재산 등 신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
 - 단, 최신화 처리 시 일부 개별 증빙을 통한 소득·재산 반영 가능
- (조사 원칙) 소득·재산 등 조사는 해당 사업 별 실시
 - 해당 사업 별 1회* 조사 실시
 - * 본인의 개인 신청정보 등록 오류 등으로 인한 소득 정보 전송 불가 시 심의 제외
 -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자도 각 사업 별 소득·재산 등 조사 실시
 - 최신화 처리를 위한 신청의 경우에도 기존 소득·재산 등 조사 절차와 동일한 기간 소요
 - * 최초 신청한 사업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정·통보한 경우에도 차기 사업 신청을 통해 소득·재산 등 재조사 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음

- 소득·재산·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(통보)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·재산·자격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·재산 등 변동분에 한하여 대상자가 최신화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차기 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 처리 과정에서 수정결과 적용 여부 심의
- 소득·재산·자격 조사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함
-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내에만 가능하며, 과거 사업에 대한 최신화 신청·예술활동준비금 소급 요청은 인정 불가

○ (최신화 요건)

- 사업결과 통지 후 소득·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소득·재산 변동분에 한하여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, 이 경우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 필요
- 최신화 신청 내용 외 조사일 기준의 **미반영 소득·재산**이 발견된 경우 담당 부서는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명 거부 시 최신화 심의 진행 불가
-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판단 하에 **공적자료를** 구비하여 제출함
-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*이 필요할 수 있음
 - * (전·월세)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포함) (주택매수)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-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·재산 등이 확인될 경우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과 상이할 수 있음

□ 소득 조사

 (소득의 의미) 조사 대상인 소득 항목에서의 소득은 '실제소득'을 의미하며, '실제소득'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함

○ (실제소득의 범위)

- 포함: 근로소득(상시근로), 사업소득(기타사업), 재산소득(임대, 이자, 연금소득), 공적이전소득 등
- 제외: 퇴직금, 현상금,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(재산으로 산정), 정부·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
 - * 개인회생 변제금 등 각종 부채 상환원리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소득 제외 요청은 불인정

○ (소득 산정기준)

- 공적자료 반영기준

항목	산정 기준
상시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	 조사시점 기준, 공적자료*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 * 공적자료에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(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상시근로소득 등)이 조회되는 경우 그대로 반영 -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(1년 이상)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: 전^前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 (또는 증빙자료로 확인)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-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(신규취업, 이직, 실직, 퇴직, 휴직, 복직, 폐업 등)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시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태를 반
기타 사업소득	영한 월 소득액 산정 • 일용근로소득의 타 근로소득과의 중복/금액 오류등의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• 기타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보 가능한 '평균 소득'반영 * 임시,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 소득인 점을 감안한 소득 반영을 위해 '전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%'를 반영
그 외 소득 (공적이전소득 등)	•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(전 ^前 월)의 소득 반영

○ (최신화 처리기준)

- 상시근로소득: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근로상태(신규취업, 이직, 휴직, 실직, 퇴직, 복직 등)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심의·반영 후 소득인정액 산정

【참고】

- 근로상태 변경에 따른 확인 자료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(국민연금공단),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 보확인서(근로복지공단) 등을 통해 확인
 - 단, 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
 - 임금체불확인서 불인정: 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 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
- 사업·재산·기타소득: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의·반영
-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(퇴직, 휴·폐업 등)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 연도 변경 신청은 불인정(소득종류 무관)
-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, 의결 절차에 따라 최신화 신청 사유 불인정, 최신화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미비, 처리 기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반영이 불가할 수 있음

□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

- 이 (근로소득)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
 - *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
 - *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, 야간근로,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,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
 - **상시근로소득**: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*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

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며,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

- * 계약기간 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결과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음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: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
-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: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
 - (1) 산재보험: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
 - (2) 고용보험: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
-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: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
-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: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,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 월액으로,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
- ⑤ 국세청 자료: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

【참고】소득 유의사항

-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.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조회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
 -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
 - 만약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주장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빙할 공적자료 제출 및 최신화 신청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반영 가능
-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사항이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서류'를 최신화 신청 시 제출
 - * 건강보험EDI서비스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,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수 월액 변경 신청,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
 -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기준으로 우선 반영하되, 소득 변동분은 신청일 이전에 한정(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수정, 국민연금공단 기준보수 월액 수정 등)
 -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후 실직 등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 등은 반영 불가
 - 회사 부도 등으로 실직 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여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금융결제원 (www.kftc.or.kr)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가능

【참고】최신화 신청 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처리

-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, 원천기관이 정의 및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결과에 따름(국세청 자료의 경우 소득세법, 고용노동부 자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)
- 상시근로소득(보수 월액)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할 시 일용근로내역서 (고용보험)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(국세청), 일용근로사실 확인서(재단 양식) 등을 확인하여 판단
- 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 중복 반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수 급자격증을 제출받아 최근 소득 반영 후 일용 및 상시 소득은 제외
- 조회 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불가

○ (사업소득)

- 기타 사업소득: 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

○ (재산소득)

- 임대소득: 부동산, 동산,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(임대소득)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

【참고】

- 임대차계약(기간, 보증금, 임대소득 등)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조 치
- 최신화 신청 시 건물, 상가,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최신화 심의 과정에서 반영
 - 보증금. 월세(→임대소득 반영)
- 이자소득*: 예금, 주식,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이를 반영
 - * 금융상품의 만기. 해지를 통해 발생하므로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. 배당소득 소명 불가

○ (기타소득)

- **공적이전소득**: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, 연금, 급여, 기타 금품*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 자동 반영
 - *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한정

【참고】공적이전소득의 범위(타 기관 연계 자료)

- 「국민연금법」,「공무원연금법」,「군인연금법」,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에 의한 연금급여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한 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
- (최신화 처리 기준)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신청 시 원칙적으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
 -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 (퇴직, 휴·폐업 등)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 불가(소득종류 무관)
 - 단, 인적용역제공 사업자(보험설계사, 서적·학습지, 화장품, 정수기 방문판매 등)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·제출하여 최신화 신청 시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가능
 - 개인사업자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어 조사되는 경우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*되는 사업장의 휴·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하여 휴·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제외
 - * (조회 시점) 사업장 휴·폐업 정보는 각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의 조사(조회) 시점의 전^前월 말 기준으로 조회하며, 이후 휴·폐업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차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고,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는 경우에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일 이전 휴·폐업이 확인될 경우만 가능

□ 재산 조사

○ (재산의 종류)

- 일반재산

- ①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토지1), 건축물2) 및 주택(**제104조 제1호 ~ 제3호)
 - 단, 종중재산, 마을공동재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
 - 공동재산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,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
 -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'고유번호'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, 이 경우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
 - 단순 '공동(공용) 사용'의 목적은 재산 제외하지 않음
- ②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선박 및 항공기**(제6조 제9호, 제10호)
- ③ 주택,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 포함)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자동 반영되며, 최신화 심사 중 추가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추가로 재산 반영 가능
- ④ 「소득세법」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

⑤ 분양권

-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자동차**(제124조): 승용·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 등

- 고급재산

- ① 고급자동차: (차령이 5년 미만*)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상 승용차
 - *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

¹⁾ 논, 밭, 대지, 임야, 기타 등

²⁾ 건물, 시설물 등

- ②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회원권**(제6조 제14호 ~ 제18호):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회원권, 요트회원권 등
- (재산의 조사 범위) 조사 대상 명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을 조사
- o (재산 산정기준)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

항목			산정 기준	
	토지, 건	• (지방세법) 시가표준액		
			•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에 따른	
일	임치	: 보증금	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	
반			* 주택의 전·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.95	
재	선박	, 항공기	•(지방세법)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3.5	
산		ol 이 ᄌ 기	•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	
	소압	원 입주권	부담금을 가감한 금액	
	분	흥양권	•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	
	자등	 동차	•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	
-1 F =1		TI 드 퀸	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	
7 7 7 1 4 1		자동차	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반영	
	1급재산	각종	(지바비비) 사기 교조에	
		회원권	• (지방세법) 시가표준액	

【참고】지방세법상 재산 종류별 과세기준 산정 방식

항목			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	지방세법 시가표준액	
			관한 법률 표준공시지가	표준지공시지가x면적	
	토지		(국토교통부, 1㎡당) 개별공시지가		
			(시·군·구청장, 1㎡당)	개 별공시지가x면적 	
		공동	공동주택가격	공동주택가격	
	ᅎ태	주택	(국세청, 국토교통부)	(국세청, 국토교통부)	
건		주택		표준주택가격	표준주택가격
축	' 7	단독	(국토교통부)	(국토교통부)	
물		주택	개별주택가격	개별주택가격	
2			(시·군·구청장)	(시·군·구청장)	
건물		물	_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
시설물		설물	_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
선박, 항공기		기	_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
회원권			_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

□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

○ (일반재산)

-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토지**(제104조 제1호 ~ 제3호)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구,「지적법」)에 따라 지적공부 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 지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*를 토대 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
 - 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,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
- 「지방세법」 에 의한 건축물(제6조 제4호)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
 - ①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물(제2조 제1항 제2호):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, 공연장, 점포, 차고, 창고 등
 - ②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**시설물**(제6조 제4호):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,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공급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(이에 딸린 시설 포함)

【참고】유형별 시설 종류

- 레저시설: 풀장, 스케이트장, 골프연습장, 전망대, 옥외스탠드,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
- 옥외저장시설: 수조, 저유조, 싸이로, 저장소
- 도크 및 접안시설: 도크, 조선대
- 급·배수시설: 송수관, 옥외 하수도, 지하수, 복개설비
- 에너지공급시설: 주유시설, 가스충전시설, 송전철탑
- 기타시설: 잔교, 주차시설, 방송중계탑,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
- 부수시설물: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기타 승강시설, 보일러 등
- 「주택법」 규정에 의한 **주택**(제2조 제1호):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

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(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지은 주택은 제외)되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, 공동주택, 비주거용 건물(상업용 건물, 오피스텔 등)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*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

- 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반영된 재산이 취득가액인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수정 사유로 최신화 신청 가능
- ① 건축물 가격=건물가격(시가표준액)+토지분가격(시가표준액)
- ② 주택 가격=시가표준액
- 임차보증금: 주택,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(전세보증금, 월세보증금, 상가 보증금 등)으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조회되고, 계약기간이 유효한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
 - ① 확정 일자 조회 정보 중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조사 기준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반영
 - ②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
 - ③ 임차보증금 양도 불인정
 - ④ 임차보증금=전·월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
-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선박·항공기(제6조 제9호, 제10호): 선박은 기선, 범선,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하며,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, 비행선, 활공기, 회전익항공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의미하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
- 「소득세법」에 의한 조합원입주권(제88조 제9항)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
 - ① 최신화 신청 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(분양가액)을 반영

- ② 추가부담금(추가분담금)을 납부한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
- ③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
- 분양권: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 반영

○ (자동차)

- 「지방세법」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*로,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3) 정보를 반영 *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등

【참고】자동차 가역	네 평가 기준 우선순위
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순위	항목
1순위	보험개발원
2순위	지방세법 시가표준액
3순위	{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(x잔가율)}과 {취득가액(x잔가율)}중 큰 값
4순위	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

- •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 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(통상 연 3회)하며 「지방세법」의 시가표준액 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(연 1회)
- 영업용 차량(택시 등)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조합 및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등을 통해 반영 가능
- 12톤 이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(1순위) {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(x잔가율)}과 {취득가액(x잔가율)}중 큰 값, (2순위) 「지방세법」 시가표준액, (3순위)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
-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

³⁾ 차종, 정원, 적재정량, 제조연도별 제조가격(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)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- * 단,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최신화 신청 시 자동차 분실·도난에 따른 '자동차말소등록증'을 제출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
 - * '차량도난확인서' 제출만으로는 재산 산정 제외 불가
- 명의도용, 명의대여, 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(수사종결)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
-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(단체명 또는 대표자, 단체명 병기)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
-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조회된 차량가액(보조금 포함)만큼 재산으로 산정하나,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

【참고】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

-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
- 장애인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제외 가능
-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
- 상품용(판매용) 자동차
 -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매매용자동차확인 서를 확인하여 재산에서 제외 가능(예시: 중고차매매상의 판매용 차량)

○ (고급재산)

-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따른 **회원권**(제6조 제14호 ~ 제18호)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골프장, 콘도미니엄, 승마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,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반영
 - ① 골프회원권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 - ② 콘도미니엄회원권: 「관광진흥법」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 - ③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

회원의 권리

- ④ 승마회원권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⑤ 요트회원권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고급자동차: (차령이 5년 미만*)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
 - * 이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

□ 자격 조사

(장애인 자격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장애 여부 조사
 및 반영

□ 소득인정액 산정

o (계산방법) 소득인정액(월)=소득평가액(월)+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

소득평가액(월)	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	소득환산율(월)	
		일반재산 연4%/12	
가구원의 실제소득	(각종 재산-기본재산공제액)	금융재산 연4%/12	
	x월 소득환산율+고급재산	자동차 연4%/12	
		고급재산 연100%	

- 소득평가액=신청인 실제소득+가구원 실제소득
- 소득환산액=[{(일반재산+자동차)-기본재산공제액}x4%÷12]+(고급재산x100%)
 - * 일반재산이 '-(음수)'일 경우 '0원'으로 처리

【참고】기본재산공제액

- 대도시 135백만 원, 중소도시 85백만 원, 농·어촌 72.5백만 원
- 공제액이 해당 소득·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며, 잉여 금액으로 타 항목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

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

□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

- o (개요) 소득인정액 심의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예술활동준 비금지원사업 신청인이 재단에 온라인 최신화 신청을 원칙으로 함
 - 산정 상세내역 확인 및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·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함이 원칙(신청주의)

○ (기한)

- 신청기한: 해당 사업 최신화 공지일로부터 10일* 이내 유선으로 상세내역 조회 후 [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-알림·상담-1:1문의-서비스 선택-예술활동준비금 클릭] 후 지정 양식에 맞춰 최신화 신청서 작성
 - *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우리 재단의 업무일 10일
- 제출기한: 차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며,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최신화 신청은 불가함*
 - * 최신화 신청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완 절차·기간은 없음
- 처리기한: 다음 반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결과 발표 일정과 동일(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하여 처리·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)
- (범위)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소득 증감, 재산 증감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
 - * (최신화 대상)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 결과, 신청인 외 제 3자의 최신화 신청 불가
 - 최신화 신청은 해당 사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산정 결과에 한 하며, 과거 사업에 대한 정정 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- 행정심의 결과는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- (대상)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상세내역 조회후 최신화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(www.kawfartist.kr)의 1:1문의를 통해 최신화 신청서 접수 후 최신화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신청인 차기 사업 신청
 - * 신청자격 해당자(유선 확인 필수) 중,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-알림-1:1문의 내 신청 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인에 한하여 절차 진행 가능(유선문의 유무, 이름, 생년 월일, 연락처, 신청 사유 작성 필수)
 - * 제3자에게 상세 내역 제공 불가하며, 정보 주체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
 - * 담당 부서의 판단 하에 최신화 신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(절차)

- 소득·재산은 최신화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,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
-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제출과 함께 최신화 신청 사유 기재 및 증빙 자료 제출
- o (결정) 전문심의를 통해 최신화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
 - 인정: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 심의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수용되면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·등록·재산정
 - 불인정: 신청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,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·재산 수정이 불가함
 - * 최신화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는 해당 반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결과 발표 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 통지로 대체
- 최신화 신청이 인정되어도 행정심의 및 재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최종 사업 신청결과는 미선정이 될 수 있음

□ 개인정보 보호

- (개요)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
- (조치사항)
 -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·보완
 - 담당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
 - * (안내범위) 신청인의 소득인정액(상세조회의 경우 1:1문의를 통하여 조회 요청)
 - 업무 외 단순 열람의 원칙적 금지
 - 소득인정액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

3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

□ 감정노동 개요

- (감정노동의 의미)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, 몸짓 등 드러나는
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
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의미함
- o (관리의 필요성) 정신적·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,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가능성,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, 기관 이미지 하락, 이직률 증가, 생산성 저하 등

○ (관리 원칙)

- 폭언, 성희롱, 업무방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·관리함
-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
- 폭언·폭력으로 고객 응대 중지 후 해당 민원인과의 재접촉 금지

【참고】민원 및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법령				
법령	내용			
	제5조(민원인의 권리와 의무)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			
미의 취기에 과회 버르	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, 행정기			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	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			
	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	제4조(담당자의 보호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			
시행령	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·치유 및 안			
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	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			
	제283조(협박, 존속협박)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			
협박죄	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			
(형법 제283조)	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			
	를 제기할 수 없다.			
업무방해죄	제314조(업무방해)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			
	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			
(형법 제314조) 	벌금에 처한다.			

	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	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
	40. (장난전화 등)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, 문자메
거버지	시지, 편지, 전자우편,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
경범죄	힌 사람
(경범죄처벌법 제3조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
	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
	3. (업무방해)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, 단체 또는 공무수행
	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
	제7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
	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	2.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, 문언, 음향,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	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(제74조)	3.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
	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
	도달하게 한 자
	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
통신매체이용 음란죄	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
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	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
관한 특례법 제13조)	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
	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별첨 1

관련 법령

□ 「예술인 복지법」

제10조(재단의 사업)
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<개정 2016. 2. 3., 2018. 10. 16., 2022. 1. 18., 2023. 8. 8.>
- 1.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
- 2.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
- 3.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
- 3의2.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
- 4.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
- 5.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 연구
- 6.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
- 7.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 운영
- 8.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
- 9.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10.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
- 11.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2.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(이하 "지원대상 예술인"이라 한다)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·주민등록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소득·재산·출입국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 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17.]

제15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(이하 "명의인"이라 한다)의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 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17.]

제15조의4(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·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·관리·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4. 17.]

별첨 2 소득·재산·자격 항목

중분류	소분류	상세분류명	연계자료	
	상시근로자소득	상시근로자소득	국세청 등	
사업소득(1)	기타사업소득	기타사업소득	국세청(사업소득)	
	임대소득	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(재신		
재산소득(2)		이지 & 드/그 배월)	국세청 종합소득(이자소득,	
	이자소득 	이자소득(국세청)	배당소득)	
		국민연금급여	국민연금급여	
		사학퇴직연금급여	사학퇴직연금급여	
		공무원퇴직연금급여	<u>공무원퇴직연금급여</u>	
기타소득(6)	공적이전소득	군인퇴직연금급여	군인퇴직연금급여	
		별정우체국연금	별정우체국연금	
		산재보험급여(휴업·장해·	│ │산재보험급여	
		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	전제포함답어 	
	기 건축물	거 ᄎ무/거무 시서무 기타	지방세정(재산세, 취득세),	
	신북돌 	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 	국토부 건축물대장	
	주택	주택	지방세정(재산세, 취득세),	
	十号	十 ⁻	국토부 건축물대장	
	E TI		지방세정(재산세, 취득세),	
	토지 	토지(밭 논 대지, 임야, 기타)	국토부 건축물대장	
일 반재 산(8)		전월세보증금	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	
	임차보증금	상가보증금	국토부 전월세 임차보증금(참	
		371 1 5 0	고정보), 보완자료 제출	
	선박/항공기	선박/항공기	지방세정(재산세, 취득세)	
	도하이즈긔		국토부(조합원입주권), 보	
	│조합입주권 └─────	조합권합구권 	완자료 제출	
	분양권	분양권	국토부(분양권), 보완자료 제출	
		국민연금급여(반환일시금)	국민연금급여(반환일시금)	
		군인퇴직연금급여(퇴직일시금)	군인퇴직연금급여(퇴직일시금)	
금융재산(5)	기타일시금	시학퇴직연금급여(퇴직일시금)	사학퇴직연금급여(퇴직일시금)	
		별정우체국연금(퇴직일시금)	별정우체국연금(퇴직일시금)	
		공무원퇴직연금급여(퇴직일사금)	공무원퇴직연금급여(퇴직일시금)	
자동차(1)	자동차	자동차	· 보험개발원 등	
	고급자동차	고급자동차 모염개발원 등		
고급재산(2)	회원권	회원권	지방세정(취득세), 사전신고	
	700	700	및 보완자료 제출 병행	

별첨 3 소득·재산 등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

 구분		조사항목	공적자료 공적자료		사회보장정보시스템		
	<u> </u>	エハらコ		변경시기	통보내용	통보시기(주기)	
			건강보험 보수월액	4월	전(前) 월 보수월액	매 월	
			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(소득신고)	1월	전(前) 월 표준보수월액	매 월	
	근로 소득	상시근로소득	고용, 산재보험 보수월액	4월	전(前) 월 보수월액	매 월	
			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	매 월(수시)	전(前) 월 보수월액	연 2회	
			국세청 종합소득 (근로소득)	11월	연말정산된 근로소득/12	연 2회	
	사업 소득		국세청 종합소득 (사업소득)	11월	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/12	연 2회	
		기타사업소득	사업자등록증	수시	신규사업자 등록자료	연 2회	
			소유사업장 직원 수	수시	소유사업장 직원 수	연 1회	
소득	재산 소득	임대소득	국세청 종합소득 (재산소득)	11월	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/12	연 2회	
			국세청 종합소득 (재산소득)	11월	이자소득/12	연 2회	
			금융정보 조회 결과	4월	(이자소득- 공제금)/12	연 2회	
	기타 소득	꽃선())서 소는	국민연금급여	1월	전(前) 월 지급된 연금급여	매 월	
			사학퇴직 연금급여	1월	전(前) 월 지급된 연금급여	매 월	
			공무원퇴직 연금급여	1월	전(前) 월 지급된 연금급여	매 월	
			국방부 군인퇴직	1월	전(前) 월 지급된	매 월	

			연금급여		연금급여	
			별정우체국연금	1월	전(前) 월 지급된 연금급여	매 월
			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(휴업급여)	비정기	전(前) 월 지급된 산재급여	매 월
			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(장해급여)	비정기	전(前) 월 지급된 산재급여	매 월
			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(유족급여)	비정기	전(前) 월 지급된 산재급여	매 월
			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(상병보상금)	비정기	전(前) 월 지급된 산재급여	매 월
	일 산	토지	지방세정 (재산세, 취득세)	재산세 11월, 취득세 수시	재산세: 시가표준액 취득세: 전(前)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(취득가액)	연 2회 (취득세: 매 월)
			국토교통부 지적대장	수시	전(前) 월에 변동(취득, 매각 등)된 토지 현황	매 월
재산			지방세정 (재산세, 취득세)	재산세 11월, 취득세 수시	재산세: 시가표준액 취득세: 전(前)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(취득가액)	연 2회 (취득세: 매 월)
			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(시설물 제외)	수시	전(前) 월에 변동(취득, 매각 등)된 건축물 현황	매 주
		선박	지 방세정 (재산세, 취득세)	재산세 11월, 취득세 수시	전(前)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	연 2회 (취득세: 매 월)

					(취득가액)	
		항공기	지방세정 (재산세, 취득세)	재산세 11월, 취득세 수시	전(前)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(취득가액)	매 월
		임차보증금	전·월세임차 보증금 (국토교통부)	수시	세입자 임차보증금액	매 월
		분양권	분양권 (국토교통부)	수시	분양권 보유정보	매 월
		조합원입주권	조합원입주권 (국토교통부)	수시	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	매 월
	자 동 차	자동차	국토교통부 차적정보	수시	자동차 등록정보	연 2회
			보험개발원	분기	차량기준가액	매 분기
	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1월	시가표준액	매년
	고급 재산	회원권	지 방세정 (취득세)	수시	전(前) 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(취득가액)	매 월
		고급자동차	국토교통부 차적정보	수시	자동차 등록정보	연 2회
			보험개발원	분기	차량기준가액	매 분기
	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1월	시가표준액	매년

[•] 공적자료 변경시기는 관계부처의 관련일정에 따라 변동가능